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272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 고 ○○○○
피 고 1. ○○○○
2. ○○○○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2014. 1. 2.자 2013회확1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 담보권은 1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4.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 ○○○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과 가항 기재 보증금 및 선급금 8,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1. 2. 위 피고 소유의 ㄱㄱ리 공장용지 7,384.3㎡, 같은 리 610-12 공장용지 6,544㎡, 같은 리 610-27 공장용지 5,66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3046호로 강제경매가, 2011타경17604호로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다. 피고 ○○○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7. 22. 청주지방법원 2013회확1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는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부인권이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의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

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지급의 정지) 이후 원고에게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